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
통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,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시기를 중전의 5월 말에서 9월 말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5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 전단 중 “이 항에서”를 “이 조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,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”를 “산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등 그 운영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5월”을 “9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기관별 정원의 관리) ①· ②(생략)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 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 는 공무원(이하 이 항에서 “시 간선택제공무원”이라 한다)으 로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 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 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 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, 주 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 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.	제24조(기관별 정원의 관리) ①·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조에서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산정한다.</u>
④·⑤(생략) <u><신설></u>	④·⑤(현행과 같음) ⑥ <u>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</u> <u>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</u> <u>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경</u> <u>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시간선</u> <u>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등</u>

제30조(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<u>5월</u>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<u>그 운영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제30조(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9월</u>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044)205-2312